

1. 개정이유

피해보전직접지불금 산정 기준 중 하나인 생산량 산출에 활용가능한 통계자료의 범위를 확대하고, 업종에 따른 생산 방식을 반영하기 위해 산출식을 세분화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생산량 산출에 활용가능한 자료 범위 확대(안 별표 2)

- 1) 활용가능한 자료의 범위에 등록어선통계, 어류양식동향조사 등 국가 승인통계를 추가함.
- 2) 통계·산출 방식이 미비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, 어업인등 지원센터 등이 조사·산출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.

나. 생산량 산출 방식 구체화(안 별표 2)

- 1) 어선어업의 산출 기준 세분화를 위해 정치망어업, 정치성 구획어업 및 마을어업의 계산식을 별도로 정의함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 예정

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
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2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“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
따라”를 “제17조, 제18조,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, 제24조, 제2
8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”으로, “어업생산동향조사에 따라”를
“어업생산동향조사, 등록어선통계, 어류양식동향조사, 원양어업통계조
사, 천해양식어업권통계 등(이하 “수산 관련 통계”라 한다)의 생산량, 어
선 톤수, 양식 면적 등을 활용하여”로 하고,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에
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수산 관련 통계를 활용하여 생산량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
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광역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 등이 조사·
산출한 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다.

별표 2 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호 나목 중 “양식어업:”을
“「양식산업발전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양식업 및 「수산업법」 제7조
제1항제2호에 따른 마을어업:”으로, “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어업시설의”
를 “허가받은”으로, “양식에”를 “양식업 또는 어업에”로 하며, 같은 호

다목 중 “어업생산동향조사 대상 품목이 아닌 경우로서 가목”을 “가목”으로, “단위면적당 생산량”을 “어선 톤당 또는 단위면적당 평균생산량”으로 한다.

가. 어선을 이용하는 어업

- 1) 「수산업법」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어업 및 「수산업법」 제40조제3항에 따른 어업 중 「수산업법 시행령」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어업: 구획된 수면의 단위면적당 평균생산량 × 신청인이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면적
- 2) 그 외에 어선을 이용하는 어업: 어선 톤당 평균생산량 × 신청인이 소유한 어선의 톤수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[별표 2]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의 생산면적 등의 산출방법 (제3조제2항 관련)	
1. (생 략) 2. 어업등의 지원대상품목의 생산량: <u>「통계법」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조사·발표하는 어업생산동향조사에 따라</u>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으로 산출하되, 해당 연도 직전 5년간의 어업(업종)별·어종별 어선 톤당 또는 단위면적당 평균생산량의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생산량을 기준으로 한다. <u><단서 신설></u>	1. (현행과 같음) 2. ----- -- 「통계법」 제17조, 제18조,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, 제24조, 제28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통계청장이 ----- ---- <u>어업생산동향조사, 등록어선통계, 어류양식동향조사, 원양어업통계조사, 천해양식어업권통계 등</u> (이하 “수산 관련 통계”라 한다)의 생산량, 어선 톤수, 양식 면적 등을 활용하여 ----- ----- -----, ----- -----.

현행	개정안
가. 어선을 이용하는 어업: 어선 톤당 평균생산량 × 신청인이 소유한 어선의 톤수 <신 설> <신 설>	다만, 수산 관련 통계를 활용하여 생산량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광역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 등이 조사·산출한 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다. 가. 어선을 이용하는 어업 1) 「수산업법」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어업 및 「수산업법」 제40조제3항에 따른 어업 중 「수산업법 시행령」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어업: 구획된 수면의 단위면적당 평균생산량 × 신청인이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면적 2) 그 외에 어선을 이용하는 어업: 어선 톤당 평균생산량 × 신청인이 소유한 어선의 톤수

현행	개정안
나. 양식어업: 단위면적당 평균생산량 × 신청인이 <u>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어업시설의 면적</u> 중 <u>실제 양식에</u> 이용된 것으로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이 확인한 면적	나. 「양식산업발전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양식업 및 「수산업법」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마늘어업: ----- ----- <u>면허 또는 허가받은 면적</u> 중 <u>실제 양식업 또는 어업에</u> ----- -----
다. <u>어업생산동향조사 대상 품목이 아닌 경우로서 가목 또는 나목의 기준으로</u> 생산량을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업인등 지원센터가 조사·산출한 값을 <u>단위면적당 생산량으로</u> 한다.	다. <u>가목 또는 나목의 기준으로</u> --- ----- ----- <u>어선 톤당 또는 단위면적당 평균 생산량으로</u> --.